

1. 개정이유

90년대 이후 외교문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외교 사안이 복잡·다양해짐에 따라 30년경과 외교문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증원하고, 외교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대면 심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심의회 정족수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외부전문가 확대 및 조문 정비(안 제5조제2항)

“심의대상 외교문서가 급증 함에 따라 공개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, 심의위원 중 외부전문가 1명을 1명 이상으로 증원하고, 외부전문가 위촉관련 부정확한 인용조항 수정 및 문구를 명확히 함.”

나.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정족수 조정(안 제5조제4항)

“외교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회를 개의하던 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가능하도록 함.”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외교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”를 “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”로, “1명”을 “1명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3분의 2 이상”을 “과반수”로, “과반수”를 “3분의 2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외교문서공개심의회) ① (생 략)	제5조(외교문서공개심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, 위원은 외교부 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· 차 관보 · 대변인 · 공공외교대사 · 기획조정실장 · 의전장 · 다자외 교조정관 · 경제외교조정관 · 재 외동포영사실장 및 <u>외교부장관</u> <u>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</u> <u>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</u> <u>서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으</u> <u>로 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조제2항</u> <u>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</u> <u>중에서 외교부장관이 -----</u> <u>----- 1명 이</u> <u>상-----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 <u>분의 2 이상의</u> 출석으로 개의 (開議)하고, 출석위원 <u>과반수</u> 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 만,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 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	④ ----- <u>과</u> <u>반수-----</u> ----- <u>3분의 2</u> <u>이상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⑤ · ⑥ (생략)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